-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458호

2020. 05. 12.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04. 29. 공기환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05. 01. 행정재경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05. 12.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공기환 의원)

가. 제안이유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를 정함(안 제5조).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정함(안 제6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하도록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동석)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천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법령 검토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양천구민이 생활환경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 봄.

○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한 바, 제1호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양천구청장이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체부위 단련 기구로 정하고, 제3호에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정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함.

-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로 공원, 쉼터, 산책로 등 공공장소로 하되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양천구가 아닌 타인이나 타 기관일 경우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개별법에 따라 괸리 중인 부지에 설치할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정함. 또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시설물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여 구민의 쉽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함.

- 안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를 실제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정하여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지 않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물이 미설치된 장소를 우선하여 설치하되,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설치 증가를 방지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함.
- 안 제8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일, 관리부서 및 관리부서 연락처를 기입한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도록 별표로 정하여 운동기구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함.
-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시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별지 서식을 마련한 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안 제11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 바, 영조물배상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구민이 야외운동기구 사용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현재 양천구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총 794개소로 조사됨.

○ 본 제정조례안은 양천구민이 생활주변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